

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서해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26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7일

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1. 금고의 수 : 단수금고(1개)

※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

2. 약정기간 : 2027. 1. 1. ~ 2030. 12. 31.(4년)

3. 금고의 주요업무

-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,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-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
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

4. 지정방법 : 공개경쟁

- 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
-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

5. 신청자격 :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서해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
6. 신청 절차

(1) 서류열람

- 열람기간 : 2026.9.14.(월)~9.16.(수) (*근무시간9:00~18:00내 열람가능)
- 열람장소 : 서해구청 세무1과 세무행정팀(본관 1층)
- 열람서류 : 2024~2026년 세입·세출예산서 및 결산서
- ※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(행정공개-예산/재정)에서 상시 열람 가능

(2) 신청서(제안서)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9. 28.(월) ~ 9. 29.(화)
- ※ 단, 근무시간(09:00~18:00) 외에는 신청서(제안서)를 접수하지 않으며, **접수 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제출이 불가함.**
- 접수장소 : 서해구청 세무1과 세무행정팀(본관 1층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
- 제출서류 및 부수
 - ① 금고지정 신청서 1부(원본 1부)
 - ② 제안서 및 증빙서류 11부(원본 1부, 사본 10부)
 - ③ 부속서류 각 1부(원본 1부)
 - 각서 1부, 사용인감확인서 1부, 법인인감증명서 1부, 첨부서류(법인정관, 법인등기부등본, 요약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) 각1부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평 가 항 목	배 점
계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26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20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21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24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7
6. 기타사항	2

※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참조

8. 심의·평가방법

-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【별표1】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【별표2】에 의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 자료와 비교·검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·평가함.
- 금융기관 제안서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“3-다. 지방세 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”, “4. 금고업무 관리능력”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·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.
-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.
-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.

9.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
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.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서해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,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, 이로 인해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새로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1금고 은행과 협조하여 수납세입금 집계 및 정산 지연, 구민의 세입금 납부 불편 초래 등 관련 세입 사무 처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.
-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27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.

10. 비용부담

-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.

11. 기타사항

- 제안서 및 증빙자료는 「인천광역시 서해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」에 따라 작성하되,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.

-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.
- 제안서 접수시 신청 금융기관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11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,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(도장) 및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.
- 접수·확인된 제안서 및 증빙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와 서해구청 세무1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봉합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,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.
- 제안서 등 제출된 일체서류(내용)는 반환하지 않음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해구청 세무1과로 문의 (☎ 032-560-4191~2)